

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6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27.

허옥희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7. 1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정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2)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3)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4) 지원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6호
 - 예고기간: 2025. 6. 27.(금) ~ 7. 3.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제안이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~제2조) 조례의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- (안 제3조)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)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 주기, 수량, 추가 지원 가능 범위를 명시한 규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5조)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에서 신청하고 군수가 검토 및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~제7조) 지원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기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